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구미경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32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,

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을 위해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와 같이 선임할 수 있는 결산검사위원 정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입니다.

-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 - 조례안의 제2조 감사위원의 정수를 기존 “20명”에서 “15명 이상 20명 이내” 로 개정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!
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감사합니다.